

판

결

사 건



조세범처벌법위반

피 고 인



검 사



변 호 인

변호사 조효동(국선)

판 결 선 고



주

문

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,200만 원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